

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

안건 제1호 (보고)

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

2026. 6. 9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경과 및 개편방향	3
III. 주요 추진과제	5
1. 주거지원	6
2. 자산형성	8
3. 세제혜택	9
IV. 향후 추진일정	10

I. 추진 배경

◇ 최근 합계출산율 등이 반등하였으나, 10년 내 20~30대 인구감소 본격화 → 출산율의 추세 반등을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이 시급

1] 최근 합계출산율 · 혼인건수가 반등하였으나, 하방위험은 지속

○ 합계출산율은 '15년 이후 지속 하락후 최근 2년간 연속 반등*

* 합계출산율(명): ('15)1.24 ('21)0.81 ('22)0.78 ('23)0.72 ('24)0.75 ('25)0.80 ('26.1Q)0.95

■ 인구수가 많은 에코붐세대('91~'96년생)의 30대 진입, 결혼·출산 정책, 코로나로 지연된 혼인 회복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의 원인

○ 혼인건수도 최근 연속 반등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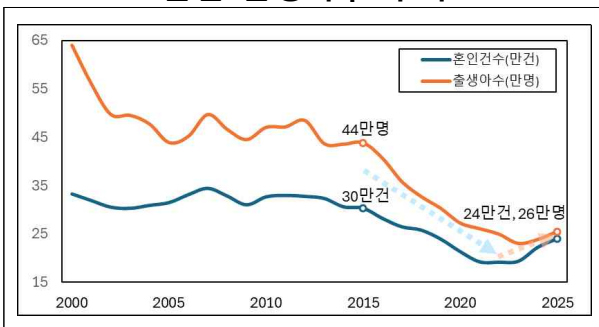
* ('00~'15) 약 30만건/年 ('19)23.9 ('20)21.4 ('21)19.3 ('22)19.2 ('23)19.4 ('24)22.2 ('25)24.0(만건)

■ 다만, 과거 10년 동안 30대의 미혼 비중이 확대*되었고 혼인신고 지연도 2배 수준 상승**하는 등 혼인·출산의 하방위험은 지속

* <30대 미혼 비중(%)> 남성: ('15)44.2 ('24)62 // 여성: ('15)28.1 ('24) 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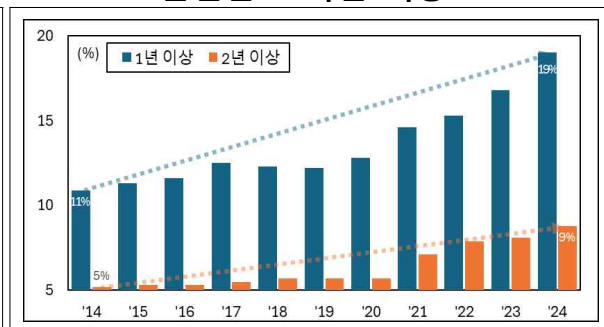
** 1년이상 지연신고 비중(%): ('14)10.9 ('20)12.8 ('21)14.6 ('23)16.8 ('24)19.0

<혼인·출생아수 추이>



* 출처: 인구동향(국가데이터처)

<혼인신고 지연 비중 >



* 출처: 국가데이터처

2] 우리나라는 혼인이 합계출산율의 선행조건 + 10년 후 20·30대 인구감소 본격화(△300만명)로 저출생 구조 고착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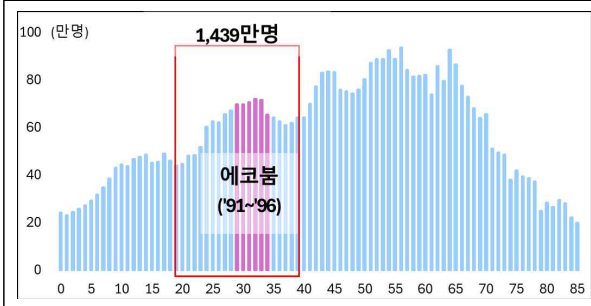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'결혼·출산 간 높은 상관관계*'인 점을 감안시 '혼인건수 제고'가 '합계출산율 제고'의 선행조건

* 혼인외 출산비중(%,'22): (OECD 평균) 41.0 (佛) 65.2 (英) 51.4 (韓) 3.9 (日) 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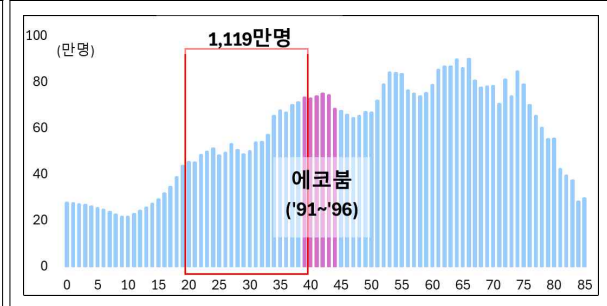
- 10년 후 20~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*가 전망됨에 따라서 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

* <20~30대 인구> ('25) 1,439만명 ('35°) 1,119만명(약 △300만명 감소 예상)

<2025년 인구분포 >



<2035년 예상 인구분포 >



* 출처: 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(국가데이터처, '23.12월 발표)

3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+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

현장의 목소리

- (정부)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(권익위, '25.12)
- (국회)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(기재위, '25.10)
- (청년) 혼인신고후 주택청약,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(청년재단 '26.2)

- 혼인신고가 주거·세제·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 체계가 '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'이라는 문제 제기

- 특히,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* 청년 입장에서 '경제적 부담'은 결혼 포기·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

*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물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(청년재단,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)

-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'결혼=부담' 인식도 소폭 확대*

* 미혼남녀 50% 이상 "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"(인구보건복지협회, '26.2)
<결혼하지 않는 이유(%, 데이터처)> 결혼자금 부족(1위): ('22) 29.7 ('24) 32.4

⇒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(Golden Time)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'결혼 친화형으로 개편'하는 것이 핵심과제

Ⅱ.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

◇ 주택 청약·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'결혼=부담' 인식 여전히 존재
→ '결혼=혜택'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

① [추진 경과]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+ 세제지원·주택금융 개선

-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*
 - * (예)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('24)
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→200%, '25)
-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*하는 등 개선 노력
 - * 디딤돌(구입자금): 7 → 8.5천만원 // 버팀목(전세자금): 6 → 7.5천만원('23)
- 주택공급*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·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, 주거·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** 강화
 - *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(민간): 18 → 23%('25)
 - **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→10년

② [개편방향]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·세제지원 등 재설계

- (평가)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, 주거·세제지원 등에서 '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'가 여전히 존재

<주요 예시>

- (주택)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
- (자산)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

- (개편방향) 주거·자산형성·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
 -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'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
 - 부동산 시장 상황,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

<참고> 기추진 주요 정책

현장의 목소리	既 발표 정책
① 주택 청약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시 배우자의 혼인 前 당첨·소유 이력 적용 배제(결혼후 본인 기회 박탈) 	배우자 당첨·소유 이력 미적용('24, 주택처분 조건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 완화 * 외벌이·맞벌이 무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적용 	맞벌이 소득기준 완화('25) (도시근로자 월평균 200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시당첨시 취소 처리 개편 	先접수분 유효처리('2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제기 등 	본인+배우자 50%('24)
② 주택 공급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등 	민간공급물량 18→23%('2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물량 확대 등 	공공 2.8→3.1만가구('26)
③ 주택 대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(구입·전세) 소득요건 상향 	일부 상향('23) ①디딤돌(구입): 7→8.5천만원 ②버팀목(전세): 6→7.5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(구입·전세) 대출한도 상향 * 디딤돌 대출한도 1인가구 2.5억원, 신혼가구 4억원으로 혼인 이후 총 대출한도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 	주택정책 대출한도 일괄 하향('25) ①디딤돌(구입): 4→3.2억원 ②버팀목(전세): 3→2.5억원
④ 세제 지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특례부여 *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필요 	1주택자 간주기간 5→10년 연장('2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 필요 * 단독가구 연 2,200만원 vs 맞벌이가구 연 3,800만원 	단독가구 2배수준 개선 (3.8→4.4천만원, '2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만 적용중 → 세제지원 확대 필요 	부부 모두 공제 (합산 월세액 연 1천만원 한도, '26)

Ⅲ. 주요 추진과제

목표

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

분야

부문

중점 추진과제

주거
지원

거주

-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
-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
- ③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

대출
청약

- 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
- 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

자산
형성

청년

- 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

농어업

- 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
- 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

세제
지원

주택

- 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결혼

- 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

1

주거 지원

1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

< 행복주택 >

구 분		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
혼인X(청년)		120%(1인, 458만원)
혼인O (신혼)	외벌이	110%(2인, 645만원)
	맞벌이	기존 130%(2인, 763만원) → 개선 160%(2인, 939만원)

< 통합공공임대주택 >

구 분		소득기준 월중위소득
우선	혼인X (청년)	120%(1인, 308만원)
	혼인O (신혼)	기존 110%(2인, 462만원) → 개선 150%(2인, 630만원)
일반	혼인X (청년)	170%(1인, 436만원)
	혼인O (신혼)	외벌이 160%(2인, 672만원) 맞벌이 190%(2인, 798만원) → 개선 220% 이상(2인, 924만원)

- (현행)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 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
- (개선방향)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*하여 입주 기회 확대

* (행복주택) 기존 月 763만원(월평균소득 130%) 개선 月 939만원(월평균소득 160%)
 (통합공공: 일반) 기존 月 798만원(월중위소득 190%) 개선 月 924만원(월중위소득 220%이상)
 (통합공공: 우선) 기존 月 462만원(월중위소득 110%) 개선 月 630만원(월중위소득 150%)

2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

- (현행)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·자산기준 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
- (개선)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(1회 한도)

* (現) 주택별 자산·소득요건에 따라 퇴거(행복주택은 자산 /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)
 (改) 소득·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

③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

- (현행)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**신혼부부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인 경우에 한해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주** 가능
 - * (예) 기존 행복주택(36m²) 거주 → 출생 후 2년 내 국민임대주택(46m²) 등 넓은 평형대로 예비 입주자 신청 → 대기순번 도래시 입주
- (개선) 자녀 성장 등으로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**이주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*하여 이주 신청 자격을 확대**
 - *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가능 대상 조항 개정 (現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2세 미만 자녀를 둔 임차인)

④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

- (현행)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(버팀목 대출)에 대해 **혼인신고 이후 소득요건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**
 - *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: 1인가구 5천만원 → 신혼부부 합산소득 7.5천만원
↳ 혼인신고 이후 7.5천만원 초과시 가산금리(+0.3%p) 발생
- (개선)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**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이후 가산금리 50% 인하(0.3→0.15%p)**

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

- (현행) **혼인신고 이후 7년이 도과한 부부, 사실상 가족관계(사실혼, 동거 등)인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사례* 상당**
 - * (민영주택 청약시) 기존 출산가구 특공 물량 일부가 신혼부부 특공 물량으로 배정
- (개선)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히 **출산가구(만2세 미만)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%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**(6월중 시행 예정)

6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

- (현행)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,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*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** 발생 가능성

*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& 가구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(19~34세)

** 例)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, 혼인신고시 합산소득(10,000만원)이 가구중위소득 요건(現 9,432만원)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

- (개선)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(기혼자 특례)

구 분('25기준)		현행	개선
일반형	혼인 미신고(1인)	중위소득 200%(1인, 연 5,736만원)	
	혼인신고(2인)	<u>중위소득 200%</u> (2인, 연 9,432만원)	<u>중위소득 250%</u> (2인, 연 11,790만원)
우대형	혼인 미신고(1인)	중위소득 150%(1인, 연 4,302만원)	
	혼인신고(2인)	<u>중위소득 150%</u> (2인, 연 7,074만원)	<u>중위소득 200%</u> (2인, 연 9,432만원)

7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

- (현황)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*

*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, 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

- (개선)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

8 농업 창업 관련 용자 지원 한도 상향

- (현행)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용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(가구당 최대 5억원)
- (개선)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용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

3 세제 지원

9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- (현행)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% 소득공제(최대 연 400만원)
 -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
- (개선) 주말부부,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

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

- (현행)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→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(~'26)
- (개선)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*

*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(~'26년)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

IV. 향후 추진일정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	시행시기
① 주거 지원		
▪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	국토부	'26.下
▪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		'26.下
▪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		'26.下
▪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		'26.下
▪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		'26.6월 ^{시행}
② 자산 형성		
▪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	금융위	'26.6월 ^{시행}
▪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	농식품부 해수부	'26.下 ^{지침개정} '27 ^{시행}
▪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	농식품부	'26.下 ^{지침개정} '27 ^{시행}
③ 세제 지원		
▪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	재경부	'26.下 ^{법령개정}
▪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		'27 ^{법령개정}

※ 향후 저고위('26.9월 인구위 개편) 중심으로 주기적(반기) 과제 발굴·개선 추진